

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
				30일	
신고인	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	소재지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 (전화번호:)			
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		명칭 및 위치		허가 연월일	
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		행위구분		[] 건축물의 건축	[] 공작물의 설치
				[] 토지의 형질변경	[] 토석의 채취
		[] 토지분할	[]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	[] 죽목의 벌채 및 식재	[] 건축물의 용도변경
		상세 내용 ※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
		허가조건 ※ 허가서에 적혀 있는 상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
허가기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허가 변경사항 ※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만 작성합니다.		변경내용			
		변경조건		변경 연월일	
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		행위구분		[] 건축물의 건축	[] 공작물의 설치
				[] 토지의 형질변경	[] 토석의 채취
관계법령 조문		[] 토지분할	[]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	[] 죽목의 벌채 및 식재	[] 건축물의 용도변경
		※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관계 법령 조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
착수 연월일				완료 연월일	

「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(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을 말합니다)	수수료 없 음
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	→ 검토
결재		→ 통보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	